

보도시점 2025. 9. 8.(월) 배포시점 배포 2025. 9. 8.(월) 10:00

개정 「방문진법」·「EBS법」, 9일부터 시행

-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-

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「방송문화진흥회법(방문진법)」 일부개정법률과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(EBS법)」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.

8일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진숙)에 따르면, 개정된 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과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은 ▲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▲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,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.

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, 방송사 임직원·시청자위원회·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,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,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는 교육부장관·교육감협의체·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.

둘째,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(EBS)에 ‘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’가 설치된다. 이사회는 재적 3/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.

방통위는 이번 「방송문화진흥회법」과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(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)로 ▲이사 추천 단체(방송미디어학회·변호사 단체·교육 관련 단체) ▲여론조사기관 기준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)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.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	책임자	과 장	김성욱 (02-2110-1410)
	방송정책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왕경희 (02-2110-1415)